##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150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 : 엄태영 · 서천호 · 김정재

권영진 • 위성곤 • 정준호

문진석 · 안호영 · 이개호

윤호중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흙길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등이 치료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내 보행로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 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일상의 생활 권에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맨발 건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 목 및 제35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도로"를 "맨발보행로 · 도로"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	13		
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가		
및 주택단지 안의 <u>도로</u>	<u>맨발보</u>		
	<u>행로・도로</u>		
나. • 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14. ~ 29. (생 략)	14. ~ 29. (현행과 같음)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			
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복리시설의 <u>설치기준</u> <후단	4. 복리시설의 <u>설치기준.</u> 이 경		
<u>신설&gt;</u>	우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맨발보		
	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